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8서식] <신설 2023. 6. 20.>

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대상구분	보훈번호	
	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

분할납부 신청 내용	① 총 환수금액	② 일시납부 금액	③ 분할납부 신청금액	④ 분할납부 횟수	⑤ 월 납입일
	원	원	원	회	일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작성방법

가.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,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,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- ① 총 환수금액 = ② 일시납부 금액 +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

나.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.

- ①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 이내,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 이내,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 이내

2. 유의사항: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(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7항 및 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분할납부 승인	→	통지
신청인		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		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		신청인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

210㎜×297㎜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]